

하도급대금 연동제



대기업과 중소기업이 **함께 분담하여**
상생하는 따뜻한 연대, 하도급대금 연동제가 시작됩니다.



공정거래위원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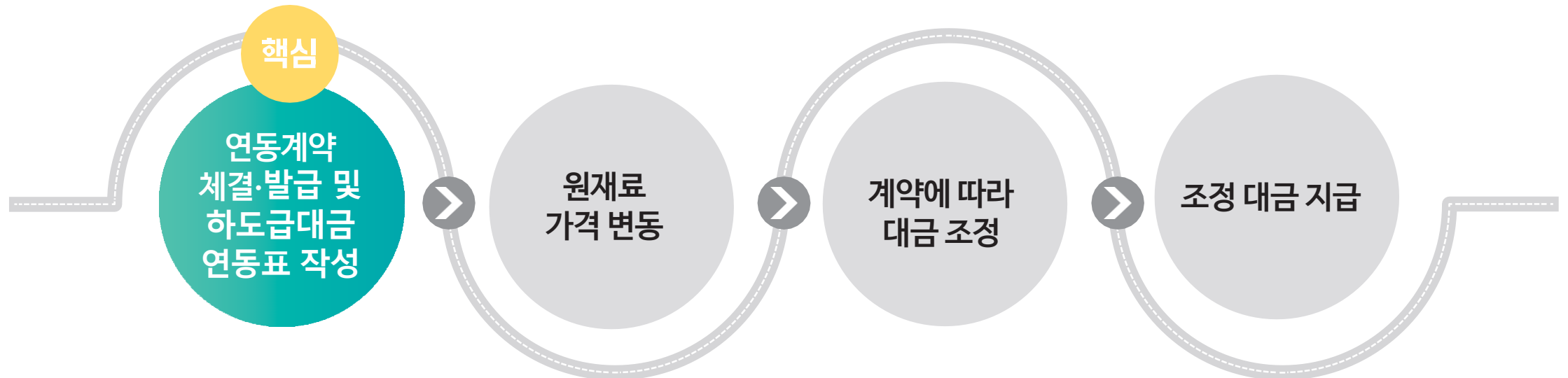
CONTENTS 목차

- 1 하도급대금 연동제란
- 2 추진 경과
- 3 시행시기 및 적용례
- 4 적용대상 거래
- 5 연동 약정 체결 의무의 예외
- 6 연동 약정서의 법정 기재사항
- 7 연동 절차
- 8 주요 체크리스트
- 9 법 위반 시 제재
- 10 하도급대금 연동 인센티브
- 11 기타 하도급법상 준수사항

하도급대금 연동제란?



- 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 물품등의 제조·건설 등을 위탁할 때
- ② 하도급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 (연동의 대상 목적물등의 명칭, 주요 원재료, 조정요건, 기준지표 및 산식, 주요 원재료 가격의 변동률 산정을 위한 기준시점 및 비교시점, 조정일, 조정주기 및 조정대금 반영일 등)을
- ③ 계약서에 ④ 기재하여 ⑤ 수급사업자에 발급하고 그 내용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⑥ 조정하여 ⑦ 지급하는 제도





➤ 자율운영('22.8. ~)

- '22년 8월, 연동계약서 제정, 공동설명회 추진 (공정위-중기부)
- '22년 9월, 납품대금 연동제 자율추진 협약식 개최

➤ 국회 본회의 통과('23. 6. 30.)

➤ 연동제 시행('23. 10. 4.)



3

시행 시기 및 적용례



> '23년 10월 4일 시행

> 시행일 이후 최초 체결·갱신되는 하도급계약부터 적용



4

적용대상 거래



➤ 주요 원재료가 있는 '하도급거래'

원사업자 중소기업자가 아닌 사업자거나, 중소기업자 중 직전 사업연도의 연간매출액이 수급사업자의 연간매출액보다 많은 사업자로서 수급사업자에 제조등을 위탁한 자

제조등의위탁 제조, 수리, 건설, 용역 관련 원사업자가 자기 업에 따른 업무를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것

* 자동차 제조업체가 건설공사사업자에게 건설공사를 위탁한 경우는 하도급거래가 아님

수급사업자 원사업자로부터 제조등의 위탁을 받은 중소기업자

☆ 하도급법상 하도급거래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상생협력법상 위수탁거래에 해당하는 경우 연동제 적용대상이 될 수 있음



➤ (주요 원재료) **하도급대금에서 10% 이상을 차지하는 원재료**

- 하도급대금이란 원사업자가 물품등의 제조등 및 납품에 대한 대가로 수급사업자에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액을 말함

※ 1건의 계약당 총 하도급대금이 기준

Q

원재료의 정의 및
범위는 무엇인지?

A

물품등의 제조를 위해 필요한 재료로서 원료와 재료를 포괄하고 천연재료, 화합물, 가공물, 중간재 등을 포함하되 이에 한정하지 않음



Q

노무비와 경비도 주요 원재료의
범위에 포함되는지?

A

노무비와 경비는 제외됨



> 천연재료

- 예: 금, 철, 구리, 알루미늄 고무, 연, 아연, 주석, 니켈, 석탄, 원유, 원목 등

> 화합물

- 예: 폴리에틸렌, 폴리프로필렌, 폴리염화비닐 등

> 천연재료 또는 화합물을 산업용으로 가공한 물건

- 예: 금속강, 금속판, 골재, 목재, 시멘트, 레미콘, 콘크리트, 선철, 아스팔트, 화학섬유, 합성수지 등

>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제조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구매하는 중간재

- 예: 자동차 부품, 전기전자부품, 기계부품, 석유화학제품, 철강재, 나사, 강철, 고무 타이어, 전기 센서 및 램프, 시스템반도체, 전동기, 발전기, 변압기, 모듈, 반제품 등



➤ 원사업자가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제2항에 따른 **소기업**에 해당하는 경우

-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 등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3의 업종별 기준 이하인 기업

(ex) 1차 금속 제조업(C24)은 3년 평균매출액 등이 120억원 이하일 경우 소기업

☞ 하도급대금 연동 약정 체결의무가 없으므로 연동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됨

➤ 하도급거래의 기간이 **90일 이내**인 경우

※ 1회 발주당 납품기간이나 계약 경과기간이 아닌 1건의 계약당 거래기간

☞ 하도급대금 연동 약정 체결의무가 없으므로 연동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됨



➤ 하도급대금이 **1억원 이하인 경우**

※ 1회 발주당 납품금액이 아닌 1건의 계약당 거래금액

☞ 하도급대금 연동 약정 체결의무가 없으므로 연동계약을 작성하지 않아도 됨

➤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**하도급대금 연동을 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한 경우**

- 다만, 그 **취지**와 **사유**를 미연동 합의서에 명확히 기재하여야 함





Q

원사업자가 연동제를 시행하지 않기로 합의해야
거래를 유지하겠다고 하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?

A

이 경우는 탈법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음
탈법행위를 한 원사업자에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와 시정조치 등이 부과될 수 있으며,
피해 수급사업자는 불공정거래신고를 하거나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분쟁조정을 신청

하도급법
제3조 제5항

원사업자는 하도급대금 연동과 관련하여 하도급거래에 관한 거래
상 지위를 남용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조의
적용을 피하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




- 연동에 필수적인 사항을 계약의 양 당사자 간 협의를 통해 약정서에 기재

 - 납품대금 연동의 대상인 목적물등의 명칭, 주요 원재료, 조정요건, 기준지표 및 연동산식, 주요 원재료 가격의 변동률 산정을 위한 기준시점 및 비교시점, 조정일, 조정주기 및 조정대금 반영일 등 하도급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
- 시행일 이후 신규 체결 또는 갱신 시 표준 연동계약서를 체결할 필요





대상 원재료 가격의 변동률을 확인하여,
조정요건 충족시 하도급대금 조정
(하도급대금 변동표에 기재·서명)

조정된 하도급대금 지급

연동계약 체결 및
하도급대금 연동표 작성

조정일
(예: 매월1일)

조정대금 반영일
(예: 매월10일)

대금 지급일



8 주요 체크리스트 (원사업자)

- ✓ 성실 협의 의무
- ✓ 계약서 기재사항 확인
- ✓ 탈법행위의 금지
- ✓ 원사업자의 조정 의무
- ✓ 연동 협의 서면 보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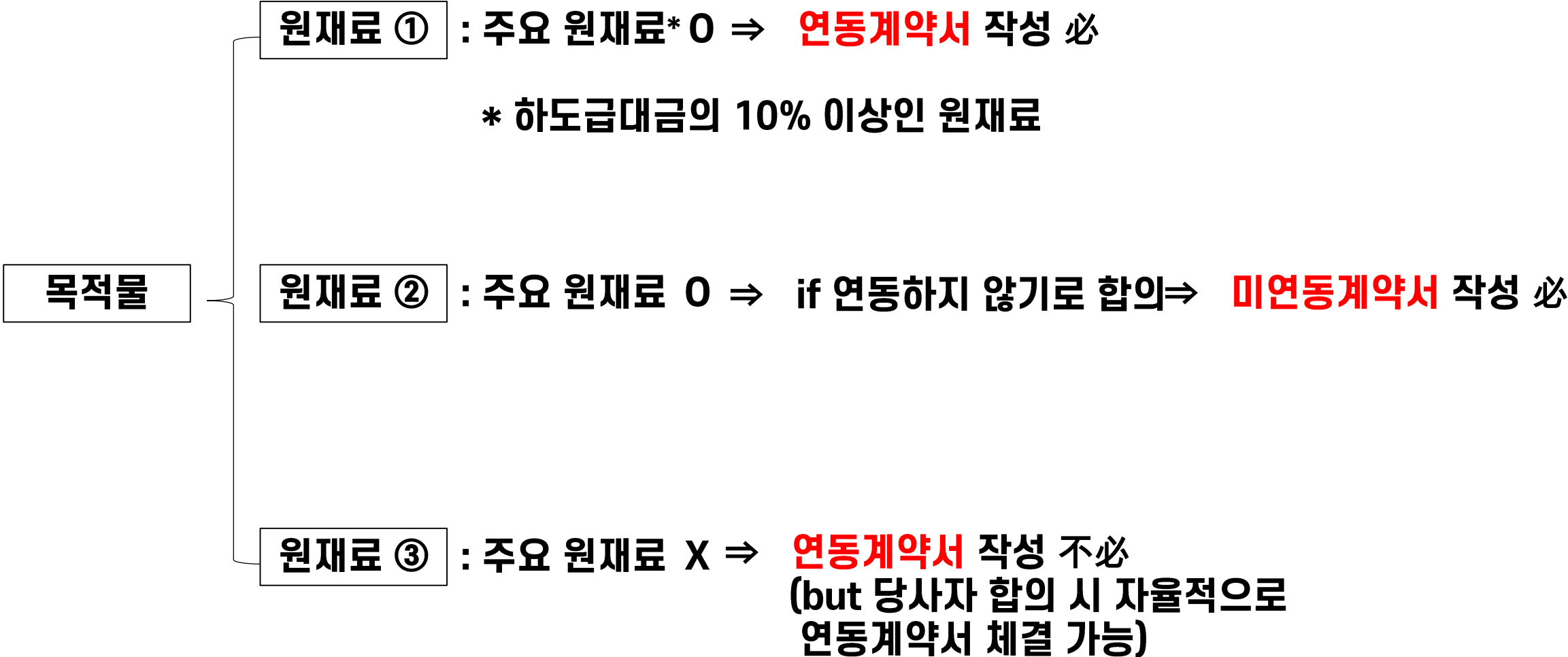


8 주요 체크리스트 (수급사업자)

- ✓ 협의 관련 근거 자료 보존
- ✓ 계약서 기재사항 확인
- ✓ 탈법행위의 금지
- ✓ 원사업자의 조정의무에 따른 하도급대금 수령
- ✓ 연동 협의 서면 보존
- ✓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조정 신청
 - ☎ 분쟁조정콜센터 1588-1490
- ✓ 공정거래위원회 신고
 - ☎ 상담전화 1670-0007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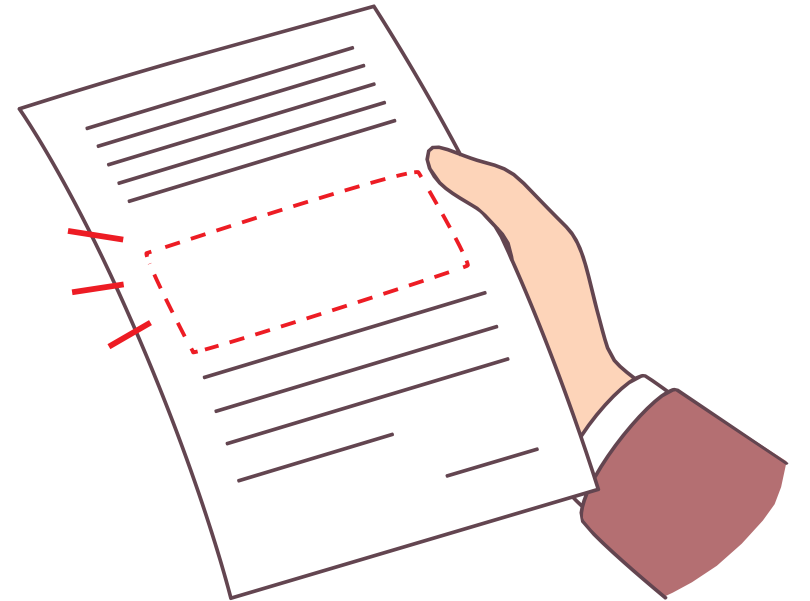
8 시나리오별 연동계약서 작성 요령





➤ 예외 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약정서에 연동에 관한 사항을 적지 않고 발급한 경우

-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
- 시정조치, 공표 및 벌점 부과
 - 3년간 누산 벌점 5점 초과 시, 공공조달 입찰참가자격 제한





➤ 성실한 협의 의무 위반

-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을 약정서에 적기 위하여 수급사업자와 성실히 협의하지 않은 경우
- 시정조치, 공표 및 벌점 부과
 - 3년간 누산 벌점 5점 초과 시, 공공조달 입찰참가자격 제한



성실한 협의 의무
위반 예시

- ▶ 협의를 하지 않은 경우
- ▶ 회의 개최, 의견 교환 등 실질적인 협의를 진행하지 않는 경우
- ▶ 권한 있는 책임자가 협의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 등



▶ 탈법행위 금지 규정 위반

탈법행위란?

원사업자가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거나,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연동 약정을 체결할 의무를 피하려는 행위

- (예시)
- 원사업자가 연동 약정서 발급 의무를 회피하기 위하여 계약기간 또는 금액을 쪼개는 경우
 -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연동을 하지 않기로 합의하기를 강요하거나 유도하는 경우

-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
- 시정조치, 공표 및 벌점 부과
 - 3년간 누산 벌점 5점 초과 시, 공공조달 입찰참가자격 제한



➤ 부당한 위탁 취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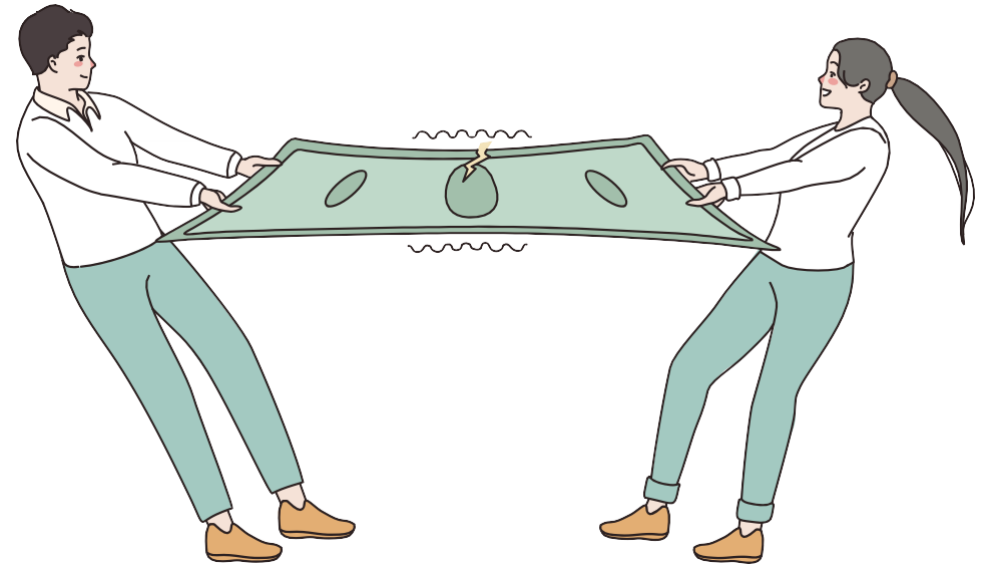
- 연동에 관한 약정을 이행하지 아니하기 위하여 위탁을 임의로 취소·변경하는 경우
- 시정조치, 공표 및 벌점 부과
 - 3년간 누산 벌점 5점 초과 시, 공공조달 입찰참가자격 제한





▶ 하도급대금 미지급

- 연동 약정에 따라 조정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시정조치, 공표 및 벌점 부과
 - 3년간 누산 벌점 5점 초과 시, 공공조달 입찰참가자격 제한





▶ 납품대금 연동제 동행기업 모집('23.2.9 ~ 12.31)

- (동행기업) 법 시행 이전에 납품대금 연동제를 선도적으로 도입하여 중소기업과 동행하는 기업
- 연동 우수기업 선정 및 인센티브 제공

인센티브

(중기부) 수탁·위탁거래 실태조사 면제, 정부포상, 스마트공장 지원사업 참여 시 가점, 의무고발요청 심의 시 법위반 점수 감경, 중소기업 정책자금 최대대출한도 확대 등

(공정위) 하도급거래 서면 실태조사 면제, 공정거래 협약 이행평가 반영, 하도급법 벌점 경감 등

(금융위) 연동제 실시 위탁기업 대상 금리감면



➤ 하도급법 제16조의 2: 공급원가 등의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

① **조정 신청:** 수급사업자는 계약 체결 후 아래 어느 경우에 해당하여 하도급대금의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에 원사업자에게 조정을 신청

* 목적물등의 공급원가가 변동되는 경우,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로 목적물등의 납품등 시기가 지연되어 관리비 등 공급원가 외의 비용이 변동되는 경우 등

② **조정 절차:**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, 조합 또는 중앙회의 조정 신청이 있는 날부터 10일 안에 하도급대금 조정을 위한 협의를 개시

③ **조정 협의의 종료:** 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는 조정신청의 내용, 협의 내용, 그 조정금액 및 조정사유를 기재한 서면을 보존

☆중소기업협동조합(중소기업중앙회)의 조정 협의 대행

-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조합원인 수급사업자의 신청을 받아 원사업자와 조정을 위한 협의를 할 수 있음
- 조정을 신청한 수급사업자가 동의하면 중소기업중앙회가 하도급대금 조정 협의를 할 수 있도록 함



➤ 하도급법 제16조의 2: 공급원가 등의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

구분	연동제	조정협의제도
대상	주요 원재료의 비용	공급원가 (재료비, 노무비, 경비)
납품대금 조정 협의 시점	사전 (계약체결 시)	사후 (계약체결 후 공급원가 변동 시)
강제성	의무	자율 (다만, 수급사업자의 조정신청 시 원사업자가 협의에 응할 의무 존재)
제재	서면 미기재 시 시정명령 및 과태료(1천만원)	조정협의 거부 또는 게을리하는 경우 시정명령, 과징금, 벌금 등



➤ 하도급법 제16조: 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

● 원사업자는

- ① 설계 변경, 목적물 등의 납품시기의 변동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 등을 이유로 계약 금액이 증액되는 경우
- ② 위와 같은 이유로 목적물등의 완성 또는 완료에 추가비용이 들 경우

그가 발주자로부터 증액받은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증액하여야함

감사합니다